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미국과 이스라엘의 사례를 중심으로 -^{*}

이 성 상^{**}

목 차

- I. 서론
- II.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의 필요성과 요건
- III. 미국과 이스라엘의 사례
- IV. 결론 및 제언

* 본 논문은 필자가 수행한 "IP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지식재산 생태계 조성에 관한 연구"의 일부 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임.

** 목원대학교 기술마케팅학과 조교수.

초록

지식재산 금융은 기업 금융과 대체투자(alternative investment)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특히 전반적인 저금리 기조와 유동성 증가, 기관 투자자의 지식재산 금융 기법 개발, 지식재산권 거래시장의 성장, 고액 특허 소송 사례의 증가에 따라 지식재산 투자를 통한 재무적 수익 가능성이 새롭게 평가되면서 대체투자의 성격을 가진 지식재산 금융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를 위한 세 가지 요건을 제시한다. 첫째, 독자적인 가치와 거래 가능성을 가진 지식재산의 지속적인 공급과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지식재산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둘째, 지식재산에 투자할 수 있는 모험자본의 양적 증가, 투자기관의 확대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부 지원 수단이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효율적인 지식재산 거래시장 및 투자회수 시장이 구축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사례를 통해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의 세 가지 요건과 관련된 정부 정책과 제도의 변화, 시장 환경 및 기업 전략 변화가 투자 활성화에 미친 영향을 살펴본다. 또한 이를 통해 국내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를 지식재산 보호 및 구제 수단의 방향 전환, 지식재산 전문 투자기관 육성 기반 마련, 투자회수 시장의 활성화 측면에서 각각 제시한다.

주제어

지식재산 금융, 지식재산 보호, 전문 투자기관, 투자회수 시장, 대체투자

I. 서론

기술금융은 기업이 보유한 기술역량과 전반적인 기술사업화 역량을 평가하여 자금을 공급하는 것으로 기술력 평가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기업금융의 한 분야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지식재산 금융은 기업 금융과 대체투자(alternative investment)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즉, 지식재산 금융은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투자·융자·보증 등의 방식으로 자금을 공급하는 기업금융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집합투자기구¹⁾ 등을 활용하여 지식재산 자체에 투자함으로써 투자자(수익자 또는 주주)에게 배당 또는 수익을 분배하는 활동까지를 포괄한다. 따라서 지식재산 금융은 지식재산 집약기업²⁾뿐만 아니라 발명·특허관리회사나 동일목적 특수목적회사 등에 자금을 공급하는 금융활동이다.

특히 최근에 전반적인 저금리 기조와 유동성 증가, 기관 투자자의 지식재산 금융 기법 개발, 지식재산권 거래시장의 성장, 고액 특허 소송 사례의 증가에 따라 지식재산 투자를 통한 재무적 수익 가능성이 새롭게 평가되면서 대체투자의 성격을 가진 지식재산 금융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전통적인 투자 상품인 주식, 채권 등과 다른 위험과 수익성을 가진 투자상품으로 지식재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헤지펀드, 사모펀드 등 재무적 투자자와 기업 등 전략적 투자자들이 특별자산펀드를 구성하여 지식재산 비즈니스를 직접 영위하거나 지식재산 비즈니스 전문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전략적 투자자로 참여하는 기업은 배당과 같은 재무적 수익뿐만 아니라 실시권 허여, 소송 방지 등의 영업상의 이익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특별자산펀드에 기반을 둔 지식재산 금융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더욱이 글로벌 투자자본과 결합된

1) 집합투자기구의 법적 유형에는 투자신탁, 투자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조합, 투자익명조합 등이 있으며, 본 논문에서는 편의상 특별자산펀드로 통칭하기로 함. 지식재산에 투자하기 위해 만들어진 투자신탁, 투자회사, 투자조합 등 특별자산펀드는 운영 형태에 따라 투자자(수익자 또는 주주)에게 배당 또는 분배하는 데 초점을 둘 수 있으며, 지식재산 보유자에게 자금을 공급하는 데 초점을 둘 수 있음.

2) 지식재산 집약기업은 우수한 지식재산(기술자산)과 지식재산(기술) 역량을 가지고 있는 기업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상대적인 개념으로 매출과 수익의 안정성이나 담보력이 높은 자산의 보유보다는 미래수익을 가져올 무형의 기술 및 지식재산이 기업가치의 원천인 기업이라고 해석할 수 있음.

비실시 기업(NPE)의 수익창출 활동에 대응하여 정책적 목적이 강한 플랫폼(platform) 펀드도 활성화되고 있다. 아이디어와 발명에 투자를 하기 위해 만들어진 발명자본(invention capital)은 관련 시장의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식재산권 출원 및 출원 생산성에 있어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하였지만 지식재산 금융 시장을 구성하는 투자자본, 전문 투자기관, 금융 상품, 지식재산 거래시장, 투자회수 시장 등은 지식재산 금융의 선진국에 비해 아직 미약한 수준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의 세 가지 요건을 제시하고, 지식재산 금융 환경이 성공적으로 조성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사례³⁾를 중심으로 세 가지 요건과 관련된 정부 정책, 제도, 기업 전략의 변화가 투자 활성화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나아가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개선이 필요한 영역을 중심으로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를 위한 과제를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독자적인 가치와 거래 가능성을 가진 지식재산의 지속적인 공급과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지식재산에 투자할 수 있는 모험자본의 양적 증가, 투자기관 확대와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정부 지원 수단(재정투입, 세제 혜택 등)의 확보, 효율적인 지식재산 거래시장 및 투자회수 시장의 구축을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를 위한 요건으로 제시한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2장에서는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살펴보고,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요건들을 정리한다. 3장에서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사례를 통해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의 세 가지 요건과 관련된 정부 정책과 제도의 변화, 시장 환경 및 기업 전략 변화가 투자 활성화에 미친 영향을 살펴본다. 4장에서는 세 가지 요건별로 국내 지식재산 금융 환경의 현황과 개선이 필요한 영역을 살펴보고,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를 위한 과제를 제시한다.

3) 미국은 가장 큰 지식재산 유통시장이 형성되어 있고, 거대 자본을 바탕으로 활동하는 다수의 지식재산 투자자본과 전문 비즈니스 기업이 존재하며, 창업국가(start-up nation)라고 불리는 이스라엘은 정치·지정학적 환경 등이 우리나라와 유사하고, 요즈마 펀드(Yozma Fund) 등을 운영하면서 지식재산 중심의 투자, 기업 창출, M&A를 통한 투자회수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II.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의 필요성과 요건

정부는 제1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을 통해 지식재산 강국 실현을 위한 20대 전략 목표의 하나로 다양한 지식재산 비즈니스 모델 창출·육성 및 지식재산 가치평가, 금융 등 지식재산 비즈니스 환경의 개선을 설정하였고, 12대 범정부 중점추진과제 중 하나로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 기반 조성을 제시하였다. 지식재산 비즈니스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지식재산 금융은 기업 및 산업부문에 자금을 공급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서 성장성이 높아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산업이다.

지식재산 금융의 활성화는 펀드 판매 업무, 수탁업무, 자문업무 등의 업무수요를 창출하고 양질의 고용을 증대할 뿐만 아니라 지식재산 관리, 평가, 거래 등 지식재산서비스 부문에서도 다양한 업무수요를 창출하고 고용을 창출할 수 있다. 대출, 예금, 주식, 채권 등의 금융상품에 발전된 금융기법을 결합함으로써 다양한 금융 파생상품이 개발되고 이를 통해 소비자들의 금융상품 선택 폭이 넓어졌듯이 지식재산 금융에 있어서도 기존의 기술평가보증, 기술평가인증서부 신용대출 등의 방법과 함께 투자신탁 등을 활용한 양도담보 형태(sale and license back 등), 질권설정을 통한 담보금융, 로열티 계약 인수, 지식재산 유동화 등의 다양한 지식재산 금융 기법 및 투자상품이 개발된다면 기업의 자금 조달 방법이 다양화 될 뿐만 아니라 투자자의 선택 폭도 증가할 것이다.

특히 상대적으로 매출과 수익의 안정성이 낮고, 담보력이 높은 자산이 부족한 초기기업에게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을 중심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경로를 다양화 한다는 측면에서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의 필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에서 간접금융의 비중이 높고, 담보, 보증, 실적 위주의 대출관행이 지속되는 국내 금융환경에서는 지식재산 기반의 중소기업 등에 대한 금융공급이 사회적으로 과소공급 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지식재산 기반 기업⁴⁾이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효과에 비해 이들 기업에 대한 투자가 사회적으로 과소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4) 미국의 경우 지식재산 집약산업은 미국 GDP의 34.8%(약5조달러), 전체 고용의 27.7%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됨(U.S. Department of Commerce, *Intellectual Property and the U.S. Economy*, 2012, 10면)

최근 3년('08~'10) 동안 산업재산권을 1건 이상 출원한 국내 기업 수는 41,582개로 나타났다. 2010년 사업체 수 기준으로 대기업 수가 3,125개임을 감안한다면 38,000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산업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기업의 자금 조달 경로로써 지식재산을 활용해야 할 필요성이나 중요성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이다. 현재 중소기업 등에 기술평가보증, 기술평가대출 등의 형태로 자금이 공급되고 있지만 2012년 기준 기술보증기금의 기술평가보증 공급 규모가 17조 7,556억 원으로 지식재산 기반 기술금융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등 정책자금의 비중이 높다. 기술평가보증의 경우 금융수혜기업의 신용위험 발생시 정부 보증 등을 통한 손실 최소화가 실행되고 있으며, 기업의 책임경영 유도 및 보증의 건전성을 위해 연대보증 제도⁵⁾를 실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의 가치를 중심으로 한 자금 공급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금융시장의 환경이 변화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융자 및 보증지원은 정부의 재정 부담 증가와 함께 한계에 봉착한 기업의 퇴출을 지연시켜 도덕적 해이 문제를 발생시킬 것이라는 비판적 견해도 많다.⁶⁾ 따라서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의 가치, 그 자체를 중심으로 투자, 융자가 이루어지는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가 필요하다.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독자적인 가치와 거래 가능성을 가진 지식재산의 지속적인 공급과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지식재산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지식재산 금융의 투자상품⁷⁾은 지식재산이기 때문에 독자적인 가치와 거래 가능성을 가진 지식재산이 지속적으로 공급되는 것이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의 전제 조건이다. 지식재산의 가치는 기본적으로 발명의 권리와 과정에 얼마나 많은 투자를 했는가에 따라 결정되지만 수요자에 따라 가치변동이 크고, 침해 소송이라는 법률행위를 통해 가치가 극대화되는 특징을

5) 2012년 5월 이후 신규보증에 대해서는 입보대상자를 기업경영에 책임있는 재(실제경영자 또는 동일관계 기업)로 제한하여 운영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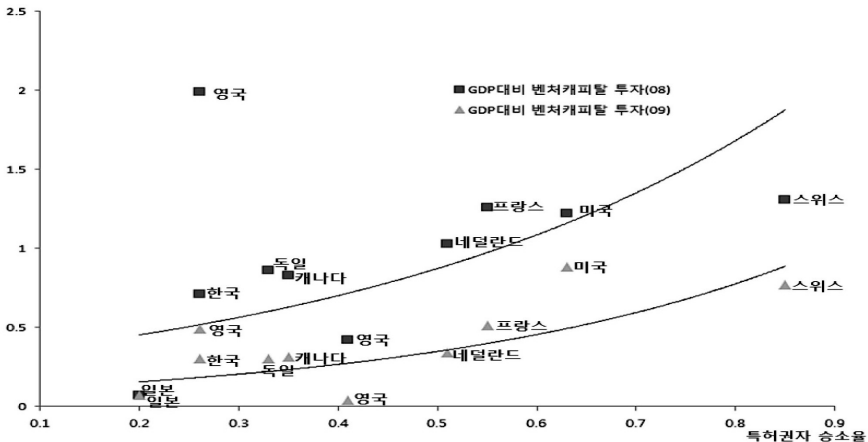
6) 정기연·이철규, "사모투자펀드 기구를 이용한 신성장동력투자펀드 운용방식의 개선에 관한 연구", 기술혁신학회지, 제13권 제3호(2010), 540면.

7) 금융투자상품이란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현재 또는 장래의 특정 시점에 금전,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취득하는 권리로써, 그 권리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전 등의 총액이 그 권리로부터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등의 총액을 초과하게 될 위험(투자성)이 있는 것을 말함(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

가지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지식재산이 새로운 경제성장의 동력이 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을 통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써 효율적인 지식재산 보호 및 구제수단의 확보가 필요하고, 이는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를 위한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지식재산은 그 특성상 모방, 위조 등 권리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지식재산에 대한 보호가 불충분하거나 권리 침해가 발생할 경우 그 피해규모가 여타의 권리 침해에 비해 매우 크고 경제적 보상 및 구제 절차도 복잡하다. 특허권자에게 유리한 특허소송 판결 등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정책이 사회 후생(social welfare)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견해 차이가 있지만 지식재산 보호 강화가 지식재산에 대한 투자와 거래 활성화의 촉매제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다. 실증 분석결과도 지식재산에 대한 존중 및 보호의 정도와 1인당 국민소득은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⁸⁾

〈그림 1〉은 미국, 독일, 한국, 일본, 프랑스 등 10개국의 특허권자 승소율(지식재산 보호정도의 대리변수)과 GDP대비 벤처캐피탈 투자의 상관관계를 보여

〈그림 1〉 특허권자의 승소율과 GDP대비 벤처캐피탈 투자의 상관관계



註) GDP 대비 벤처캐피탈 투자는 OECD 자료. 특허권자 승소율 자료는 Hill, D. W., *Global Enforcement & Exploitation of IP*, Finnegan-Hosted Event: Speaking Engagement, 2006.10.25.

8) Barrie S., Riel M. and Wolfgang M., "Social Diversity and the Creative Society of the 21st Century", *The Creative Society of the 21st Century*, OECD, 2000.

주고 있는데 특허권자의 승소율과 GDP대비 벤처캐피탈 투자의 상관관계는 0.36~0.74(영국 제외시 0.81~0.82)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지식재산에 대한 보호 강화가 기술 또는 지식재산 중심의 투자 활성화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두 번째,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식재산에 투자할 수 있는 모험자본의 양적 증가, 투자기관의 확대와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정부 지원 수단(재정투입, 세제 혜택 등)의 확보가 필요하다.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를 위해 금융활동의 기반이 되는 자본의 양적 증가가 필요하다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지만 지식재산의 특성을 감안하면 지식재산에 투자할 수 있는 모험자본의 양적 증가와 함께 지식재산 전문 투자기관의 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 새로운 투자대상으로써 지식재산의 가능성을 확인한 헤지펀드, 사모펀드, 투자은행, 벤처캐피탈 등 다양한 투자자본과 투자기관이 참여함으로써 지식재산 금융 시장은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아직 일부 금융기관이나 기관투자자들을 제외하고 지식재산을 대체투자자산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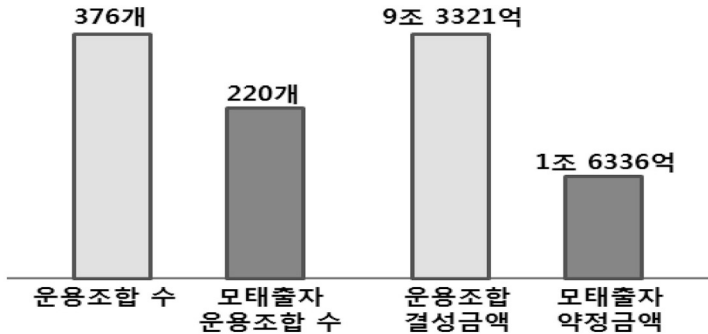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정부가 재정투입을 통해 조성하는 정책펀드는 지식재산에 투자할 수 있는 모험자본의 양적 증가와 투자기관의 확대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매년 단년도 위주로 편성되는 정부의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재원이 공급되는 방식에 비해 정책 펀드는 안정적 재원 확보 및 공급을 통해 시장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민간부문의 투자자금 유인에 보다 효과적이다.⁹⁾ 우리나라의 중소기업투자 모태펀드, 농수산식품모태펀드, 신성장동력투자펀드는 각각 중소벤처기업, 농림수산식품경영체,¹⁰⁾ 신성장동력분야 신기술 사업화 기업에 대한 투자 촉진이라는 목적과 함께 창업투자회사, 신기술금융회사 등의 투자기관을 육성하고자 하는 목적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목적달성을 위해 정부지분 우선매입옵션제도와 같은 특별한 인센티브를 투자기관에 제공하기도 한다. 실제로 중소기업 모태펀드의 사례를 보면 국내 115개 창업투자회사가 운영하고 있는 376개 투자조합 중 모태펀드가 출자한 투자조합 수는 220개로

9) 박정서·윤병섭, “한국모태펀드의 운용 현황과 투자 성과 분석”, 중소기업연구, 제24권 제2호(2012), 27면.

10) 식품사업자, 농림수산식품의 소재 또는 그 생산설비의 제조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뿐만 아니라 농업경영체(농업인과 농업법인), 어업경영체(어업인과 어업법인)를 포함.

58.5%에 이르고 있다. 또한 현재 운영하고 있는 투자조합이 없는 중소기업창업 투자회사를 제외하고 각 창업투자회사(97개)별로 투자조합 중 모태펀드가 출자한 투자조합의 비율을 산정하였을 때 30개(30.9%) 창투사는 100%로 나타났으며, 50% 이상인 창투사도 66개(68.0%)로 나타났다.

〈그림 2〉 창업투자회사가 운영하고 있는 투자조합 중 모태펀드 출자 비중



註)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공시자료를 분석한 것이며, 기준시점은 2013년 5월임.

또한 직접적인 재정 투입과 함께 세제 지원과 같은 지원 수단의 확보도 필요하다. 지식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법인의 소득에 대한 세율을 인하시켜 주는 Patent Box 제도의 효과를 분석한 Griffith 등(2010)의 연구나 EUROSTAT의 통계분석 결과를 보면 제도를 도입한 국가가 그렇지 않은 국가에 비해서 특허출원, 중·고급제품 수출에 있어서 더 높은 성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¹¹⁾

마지막으로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를 위해서는 효율적인 지식재산 거래시장 및 투자회수 시장의 구축이 필요하다. 지식재산에 대한 투자-성장-회수-재투자의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투자회수 시장의 활성화되어야 한다. 12개의 증권거래소 및 장외거래시장(OTC마켓), 활성화된 M&A 시장,¹²⁾ 지식재산 유통시장은 미국에서 거대 자본을 바탕으로 다수의 지식재산 투자자본과 전문 비즈니스 기업이 활동할 수 있는 강력한 기반이 되고 있다.

11) 노민선, "지식재산 조세지원제도 개선 방안 연구", 지식재산연구, 제7권 제4호(2012), 128면(재인용).

12) 미국의 경우 M&A에 의한 자금 회수비중은 금액기준으로 2010년 72.8%, 2011년 70.8%이었음.

Ⅲ. 미국과 이스라엘의 사례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의 세 가지 요건과 관련된 미국의 정부 정책 및 제도 변화, 시장환경 변화가 투자 활성화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기술 또는 지식 재산 집약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변화를 분석한다. 미국의 벤처캐피탈 투자는 1980년부터 급속하게 증가하였는데, 1980년 이후 벤처캐피탈 투자가 전년 대비 50% 이상 증가한 경우가 세 차례 있었는데 80년대 초(81년과 83년), 90년대 중반(95년), 벤처버블기(99년과 2000년)이다.¹³⁾

세 번의 벤처캐피탈 투자의 급속한 증대를 가져온 요인은 <표 1>과 같이 특허권 강화, 자본이득에 대한 세제 혜택 강화 및 자금공급 확대, 신속한 투자회수 시장의 조성으로 요약할 수 있다.

<표 1> 미국의 벤처캐피탈 투자 활성화 요인

	80년대 초 (81년과 83년)	90년대 중반(95년)	벤처버블기 (99년과 2000년)
특허권 강화	-독점금지정책의 강조에서 친특허(Pro patent)정책으로 전환 (1980년) -1982년 연방순회항소 법원(CAFC) 설립¹⁴⁾ -특허대상이 미생물과 유전자, 컴퓨터소프트웨어로까지 확대 (1980년 대법원 판결)	-무역관련 지식재산권 협정(TRIPS) 체결(95년 발효) -TRIPS협정에 따른 미국 특허법 개정(95년 시행) -특허권 침해행위 정의 확대(96년 1월 발효) -가출원제도¹⁵⁾ 시행 (95년 6월 발효) -등록 지연에 따른 특허 기간 연장신청 허용 (95년 6월 발효)	-미국발명가보호법 (AIPA, 1999)¹⁶⁾ 제정: 심사 지연에 따른 특허 기간 연장, 재심사기회 부여, 특허권자의 손실 이익 반영 등 발명자의 권리 강화 -BM(Business Model 또는 Business Method) 특허의 특허성 인정(SSB 사건, CAFC, 1998) 및 BM특허 급증 (99년, 2000년)

13) 1992년에도 투자규모가 전년대비 62.4% 증가하였지만 이는 1989년~91년까지 벤처캐피탈의 투자가 감

자금공급 확대 및 정부 지원 수단 (세제혜택, 제도개선)	-ERISA 'prudent man' 조항개정을 통한 연금의 벤처캐피탈 투자 확대 -자본이득에 대한 세율 하락: 35%(77년)→ 33.8% (78년)→28%(79 년)→23.7% (81년)→ 20%(82년~)		-금융서비스 현대화법 제정(1999년 11월)
신속한 투자회수 시장 구축	-나스닥 전국시장 (Nasdaq National Market System) 완성 (82년)	-Merger Wave 시작 (1993~): 전 세계적으로 20조 달러 이상의 M&A 시장 규모 형성 -미국 벤처캐피탈의 투자 자금 회수 경로에서 M&A시장의 비중이 50% 근접(94년) *2011년 기준 70.8%	-나스닥 지수 최고기록 (5048.62)기록(2000년 3월)

소한 영향 때문임. 1988년과 비교했을 때 1992년의 투자 증가율은 4.6%에 불과하였음.

- 14)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이 설립되기 전에는 대부분의 법원들은 반특허주의(Anti-patent)성향이 강했고, 재판에 계류된 특허에 대해서는 상당수를 무효화시켰음.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에 지방법원의 특허관련 사건의 판결에 대한 항소를 전담하는 재판관할권을 부여하였고, 그 결과 특허청구범위의 해석의 방법, 권리의 안정, 예측 가능성 등이 확보되는 효과를 거둠(김원준, "미국 Pro-patent 정책과 특허법 개혁안", 법학논총, 제29권 제2호(2009), 51-52면).
- 15) 가출원(provisional application) 제도는 선발명주의에 따르는 미국 출원인의 불이익을 보완하고 개량 발명을 용이하게 보호하기 위해 정규출원보다 간편한 절차를 통해 출원을 해서 먼저 출원일을 확보하고 1년 이내에 정규출원을 하여 출원일의 소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임.
- 16) 미국발명가보호법(American Inventors Protection Act of 1999)의 주요 내용은 특허수수료의 감축, 특허출원의 심사가 지연된 경우 이를 보상하기 위하여 특허기간의 연장, 발명자에게 특허유효성을 검토할 수 있는 재심사기회를 부여, 손해배상액 산정시 특허권자가 입은 손실이익으로 손해액의 추정 등임.

먼저 미국의 벤처캐피탈 투자가 급증했던 세 번의 시기에 모두 미국의 특허법 개정 등을 통한 특허권 강화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사항이다. 특허권 보호 강화가 기술 또는 지식재산 집약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시켰는가를 살펴볼 수 있는 또 다른 자료는 미국 생명공학산업에 대한 투자 변동이다. 생명공학산업의 경우 1980년 이후 벤처캐피탈 투자가 전년 대비 50% 이상 증가한 경우가 한 차례 더 있었는데 1996년이다. 이 시점에 생명공학 제조방법에 관한 특허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미국 정부는 생명공학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1995년에 생명공학 제조방법에 관한 특허법을 개정하였고, 1996년에 미국 의회를 통과한 것이다.¹⁷⁾ 미국 벤처캐피탈협회(NVCA)은 생명공학 산업만큼 특허 보호가 중요한 산업이 없으며, 특허법 개정을 통해 생명공학 산업 중소기업의 특허 확보가 촉진되고,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도 활성화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1979년 개정 이전에 종업원 퇴직 소득보장법(ERISA: Employee Retirement Income Security Act)은 연금의 벤처캐피탈에 대한 과도한 투자를 금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prudent man’ 조항이 개정되면서 많은 소액투자자들이 연금금을 통해 벤처캐피탈에 대규모 투자를 하게 되었다. 1978년에 미국 벤처캐피탈 기금 중 15%(2억 1,800만 달러)만이 연금에 의해 조성되었는데, 1988년에는 46%(30억 달러)가 연금에 의해 조성되었다. 1999년 11월에 제정된 ‘금융서비스 현대화법(Financial Service Modernization Act)’의 영향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미국의 금융산업이 급성장하면서 은행, 보험, 연금기금 등으로 금융자산이 모이게 되었고, 금융자산과 금융서비스산업의 성장은 금융산업을 규제하는 제도의 변화로 이어지게 되었다. ‘금융서비스 현대화법’은 대공황 이래 유지되어 오던 은행업과 증권업(The Bank Act of 1933) 사이, 은행업과 보험업(The Bank Holding Company Act of 1956) 사이의 법적 방화벽을 크게 낮추게 되었고, 이

17) 생명공학 제조방법에 관한 특허법 개정 이전에는 생명공학 제조방법 특허에 있어서 제조방법 특허는 신규하고, 진보성이 있는 출발물질(starting material)을 사용하거나, 신규하고 진보성이 있는 최종물질 또는 물건을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방법이라도 반드시 그 제조방법 자체가 신규성, 진보성 등의 특허요건들을 절대적으로 충족하는 것은 아니었음. 특허법 개정 이후에는 특허를 구성하고 있는 생명공학 제조방법은 그 제조방법에 이용되는 구성물질이 신규하고 진보성이 있는지 또는 그 제조방법의 결과로 발생하는 구성물질이 신규하고 진보성이 있는지에 의해 그 제조방법의 진보성을 판단하게 됨.

는 다시 금융서비스산업의 성장을 자극하게 되었다.¹⁸⁾ 대표적인 예로 1980년에서 2004년 사이의 투자자 유형별 주식보유 변화를 살펴보면 뮤추얼 펀드의 주식 보유 비율이 1980년 2.7%, 1990년 6.6%에서 2000년 18.3%, 2004년 21.5%까지 증가하는 등 금액과 비율 모두에서 비약적으로 성장하였다.

이스라엘의 사례에서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의 세 가지 요건과 관련된 정부 정책 및 제도 변화, 시장환경 및 기업 전략 변화가 투자 활성화에 기여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독자적인 가치와 거래 가능성을 가진 지식재산의 지속적인 공급과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효과적인 지식재산 보호 및 구제 수단의 확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스라엘은 지식재산의 보호 수준 평가에서 미국이나 일본 등에 비해 높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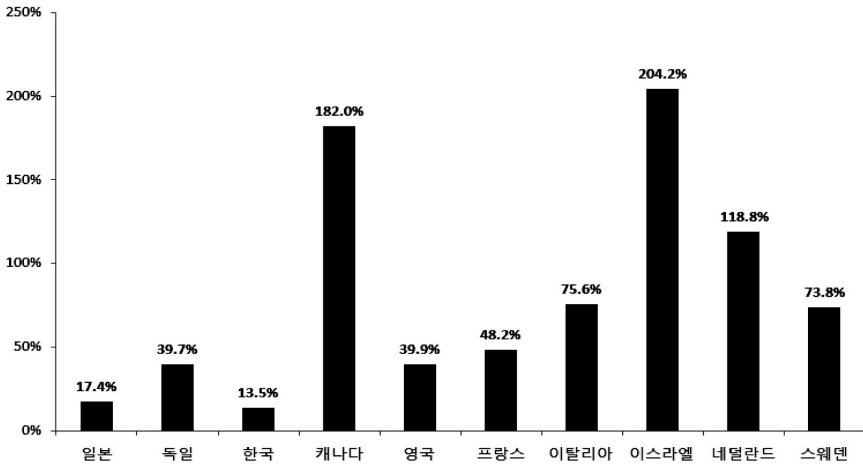
〈표 2〉 IMD, WEF의 지식재산 보호 수준 평가

	한국	미국	이스라엘	일본
WEF(2012~2013)	4.3	5.0	4.8	5.4
IMD(2013)	5.22	8.39	7.7	7.77

그러나 이스라엘은 미국 특히 중심의 출원이 전 세계에서 가장 활발한 국가이기 때문에 거래 가능성을 가진 지식재산의 지속적인 공급과 보호라는 요소를 상당 부분 충족시킬 수 있었다. 이는 이스라엘의 내수 시장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다는 측면과 미국 경제와의 특수한 관계에 영향을 받기는 하였지만 1990년대 후반부터 전략적으로 미국 특허 중심의 출원 전략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은 1994~2010년 사이에 미국 특허출원(direct and PCT national phase entries) 건수로 미국을 제외하고, 전 세계에서 8번째로 많은 미국 특허 출원 국가이며, 자국 특허출원 건수 대비 미국 특허출원 건수의 비율은 204.2%로 전 세계에서 가장 높다. 즉, 자국에는 출원하지 않더라도 미국에는 특허를 출원한다는 의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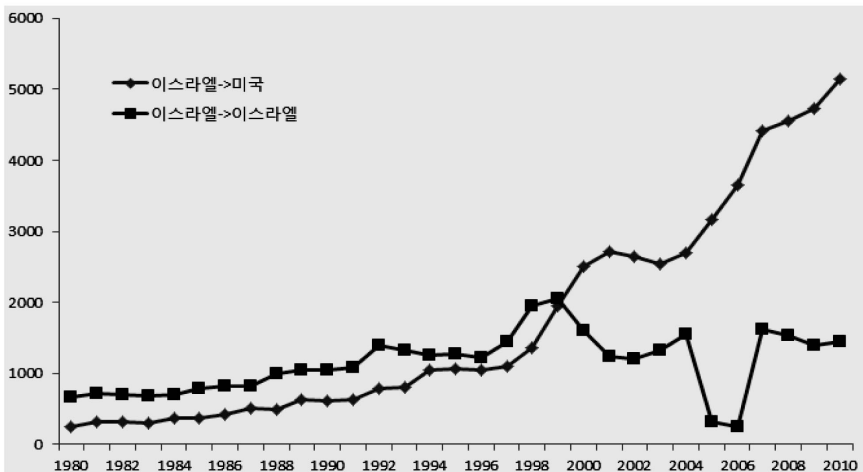
18) 박노영, "미국 금융산업의 발전: 자산관리산업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제17권(2006),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60~62면.

〈그림 3〉 미국 특허출원 상위 10개국의 자국 특허출원 대비 미국 특허출원 비율(1994~2010)



이러한 전략적 변화는 1990년대 말부터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1999년부터 이스라엘의 미국 특허출원이 급증하면서 이스라엘의 자국 내 특허출원보다 미국 특허출원이 많아졌다. 흥미로운 것은 이 시기가 요즈마 펀드가 민영화 되는

〈그림 4〉 이스라엘의 자국 특허출원과 미국 특허출원 추이



등 이스라엘의 벤처캐피탈 산업이 크게 성장하면서 모험자본의 양적 증대가 이루어진 시기라는 것이다.

지식재산 또는 지식재산 집약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모험자본의 양적 증가, 투자기관의 확대 및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정부 지원 수단의 확보 측면에서는 요즈마 펀드의 역할을 빼놓을 수 없다. 이스라엘 벤처캐피탈 산업은 1985년 시작되어 역사가 짧고 1990년대 초반까지 3개의 벤처캐피탈만이 활동하고 있었다. 정부차원의 대규모 R&D 지원에도 불구하고 초기 창업기업에 적절한 자금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R&D 성과가 경제적 성과로 전환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1992년에 벤처캐피탈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국영보험회사인 Inbal을 이용하여 벤처캐피탈 펀드를 육성하는 프로그램을 시도한 것도 이러한 상황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 시도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이스라엘 정부는 1993년 1억 달러를 출자하여 요즈마 펀드를 조성하게 되었다.

요즈마 펀드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는 벤처캐피탈 산업을 육성하고, 민간 투자기관 및 해외 자본의 투자 확대를 유도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정부는 투자의 위험 공유와 시장 친화적 제도를 설계하고, 정부 보유 지분을 매입할 수 있는 선택권 부여 등 직·간접 인센티브를 제공하였다. 요즈마 펀드 이후 이스라엘의 벤처캐피탈 시장은 급속도로 발전하여 1991년에 1개에 불과했던 벤처캐피탈 펀드의 수가 2008년에는 171개까지 증가하였다. 즉,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투입을 통해 지식재산에 투자할 수 있는 모험자본의 양적 증대와 함께 투자기관의 확대가 이루어진 것이다. 여기에 벤처캐피탈, 사모펀드, 기관투자자 등이 전문 관리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인큐베이터가 정착되면서 현재 이스라엘은 가장 성공적인 투자 환경을 갖추고 있는 국가로 평가받게 되었다.

투자자금의 신속한 회수 시장 구축 측면에서는 투자회수의 90.2%가 M&A를 통해 이루어지는 등 해외 IPO와 M&A 비중이 매우 높았다. 물론 이는 이스라엘 내수 시장이 작다는 것과 관계가 있지만 M&A 시장이 활성화 되어 있다는 것은 투자자금의 신속한 회수를 가능하게 하는 요인이었고 결과적으로 투자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요즈마 펀드를 통해 조성된 2억 6300만 달러는 217개 창업기업에 투자되었으며, M&A, IPO 등을 통해 122개 기업으로부터 회수에 성공

하여 56%의 회수율을 기록하였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투자-성장-회수-재투자의 선순환 구조가 정착될 수 있었다. 신속한 회수 시장을 바탕으로 이스라엘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벤처캐피탈 투자금액이 0.45%(09년 기준)로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르게 되었으며, 인구 1인당 민간 벤처캐피탈 투자금액도 세계 1위를 기록할 수 있었다.

IV. 결론 및 제언

독자적인 가치와 거래 가능성을 가진 지식재산의 지속적인 공급과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전 세계 4위의 특허 출원 국가이고, 미국 특허출원 건수에 있어서도 미국을 제외하고 전 세계 세 번째로 많다. 그러나 일부 대기업의 점유율이 매우 높고, 지식재산 금융을 통한 자금 조달이 필요한 중소, 벤처기업의 경우 해외보다는 국내 출원 위주로 지식재산 창출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국내 지식재산의 생산 비용(발명의 권리화 과정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고려할 때 금융기관들은 국내 특허 등을 대상으로 투자나 용자를 하기가 어렵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지식재산의 가치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지식재산의 보호 수준은 미국이나 일본, 이스라엘 등에 비해서 높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영미권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형사적 구제 수단을 가지고 있지만 재산권 침해의 구제 수단으로 적합하지 않은 측면이 많다.

지식재산에 투자할 수 있는 모험자본의 양적 증가, 투자기관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일부 금융기관이나 기관투자자들을 제외하고 지식재산을 대체투자자산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 금융과 산업의 연관성이 높아지고 금융에 대한 전문성이 없이는 새로운 경제, 산업 정책 추진이 제한을 받을 수 밖에 없는 현실을 고려할 때 지식재산 금융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먼저 금융기관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 더불어 지식재산의 속성을 이해하고, 지식재산 거래시장, 지식재산 가치평가 등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가진 투자기관의 육성이 필요하다. 투자 확대를 지원할 수 있는 정부 지원 수단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

의 연구개발 관련 조세지원은 국제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연구개발의 결과로 도출되는 지식재산과 관련된 조세지원은 지원혜택이 계속해서 축소되고 있다.¹⁹⁾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가 1982년부터 시행되다가 2005년 폐지된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효율적인 지식재산 거래시장 및 투자회수 시장의 구축이라는 측면에서는 그동안 여러 차례 M&A 활성화 방안이 마련되었지만 투자자금 회수 경로로써 M&A의 비중이 여전히 낮다. 지식재산 매각 등을 통한 적극적 투·융자금 회수를 지원하기 위해 지식재산 취득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확대 등이 필요하지만 기술취득금에 대한 세액공제는 2001년 제도 도입 당시에 비해 세액공제 대상이나 공제율이 감소하였다. 제도 도입 초기에는 대기업 및 중소기업을 모두 지원 대상으로 하였지만,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공제율은 2003년부터 10%에서 7%로 축소되었고, 대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는 2010년부터 폐지되었다. 또한 특허 소송을 위한 전자통신연구원과 미국의 SPH America, LLC 간의 특허 전용실시권 계약 설정 사례에서 나타난 국부유출 논란 등과 같이 상품수출과 특허기술 수출에 대한 시각 차이가 존재한다. 지식재산을 활용한 해외에서의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수익창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및 사회적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를 위한 세 가지 요건을 제시하고, 이와 관련된 정부 정책과 제도의 변화, 시장 환경 및 기업 전략 변화가 투자 활성화에 미친 영향을 미국과 이스라엘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았다. 또한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의 세 가지 요건별로 국내 지식재산 금융 환경의 현황과 개선이 필요한 영역을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식재산 보호 및 구제 수단의 방향을 형사적 구제수단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전환하고, 연구개발 세액공제 범위에 특허선행기술조사 및 출원비용 등 특허권 취득과 관계된 비용을 포함시켜 발명의 권리화 과정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유도하여야 한다. 프랑스, 미국, 포르투갈 등에서 특허 창출 및 유지비용

19) 노민선, 앞의 논문(주 11), 135면.

에 대한 조세 지원을 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식재산 전문 투자기관 육성을 위한 제도적, 정책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 업무집행조합원이 한국벤처투자조합의 자금을 사용함에 있어 직접 지식재산을 매입하여 투자할 수 있도록 관련법(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 3 등)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²⁰⁾ 또한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또는 지식재산기본법에 지식재산 전문투자기관의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으로 지식재산 전문투자기관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 현재 지식재산 기본법에 지식재산서비스 전문기업,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기술거래기관, 전담조직, 사업화 전문회사, 기술평가기관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 한국모태펀드가 출자한 조합의 운용사 선정 시에 지식재산 분야의 특성을 반영한 선정 우대 기준 또는 운용사 기본요건 등을 제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한국모태펀드의 출자 조합 운용사 선정에서 문화계정의 경우 문화산업 및 문화콘텐츠의 특성을 반영하여 다양한 우대 기준과 운용사 기본 요건을 설정하여 활용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특허 계정에 있어서도 주목적 투자 대상에 따라 지식재산 거래시장, 지식재산의 가치평가 등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가진 투자기관을 우선적으로 선정할 있도록 선정 기준이나 운용사 기본요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양도담보, 질권설정 등으로 제공된 자금의 원활한 회수를 위해 지식재산 취득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와 기술수출 관련 규정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세액감면이 많이 이루어지는 현재 상황에서 지식재산 취득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대하는데 대해 부정적 견해도 있지만 양도담보, 질권설정 등으로 제공된 자금의 회수를 위한 지식재산 매각 또는 취득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세액 감면을 확대하거나 새롭게 도입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취득시 세액공제비율을 현행 7%에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율(25%)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거나 담보자산인 지식재산의 취득이라는 전제하에 대기업에도 지식재산 취득에 대한 세액 감면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20) 2013년도 1차 모태펀드 출자에서 발명특허관리회사 등을 통하여 금융기관의 지식재산 담보대출 대상 특허취득에 40억원 이상 투자하도록 했던 사례도 있음(한국모태펀드 출자 조합(특허기술 사업화 분야)의 운용사 선정 결과를 분석한 것으로 운용사 선정 결과는 한국벤처투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음).

참고문헌

〈국내 학술지〉

김원준, “미국의 Pro-patent 정책과 특허법 개혁안”, 기업법연구, 제29권 제2호(2009).

노민선, “지식재산 조세지원제도 개선 방안 연구”, 지식재산연구, 제7권 제4호(2012).

박노영, “미국 금융산업의 발전: 자산관리산업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제17권(2006),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박정서 · 윤병섭, “한국모태펀드의 운용 현황과 투자 성과 분석”, 중소기업연구, 제34권 제2호(2012).

정기연 · 이철규, “사모투자펀드 기구를 이용한 신성장동력투자펀드 운용방식의 개선에 관한 연구”, 기술혁신학회지, 제13권 제3호(2010).

〈기타 해외 자료〉

Barrie S., Riel M. and Wolfgang M., “Social Diversity and the Creative Society of the 21st Century”, *The Creative Society of the 21st Century*, OECD, 2000.

Griffith, R., Miller, H. and O’Connel, M., *Corporate Taxes and Intellectual Property: Simulating the Effect of Patent Boxes*, Institute for Fiscal Studies, 2010

Hill, D. W., *Global Enforcement & Exploitation of IP*, Finnegan-Hosted Event; Speaking Engagement, 2006.10.25.

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2012.

U.S. Department of Commerce, *Intellectual Property and the U.S. Economy*, 2012.

WEF,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2-2013.

A Study on IP Finance Revitalization - Focusing on the case of United States and Israel -

Seong Sang Lee

Abstract

IP finance has the characteristics of both corporate finance and alternative investment. The market for IP finance with the characteristics of alternative investment is rapidly growing as the profit potential of IP investment has been re-evaluated in the midst of low general interest rates, liquidity improvement, development of IP financing techniques by institutional investors, growth of IP market, and growing number of high-end patent litigation cases.

This study presents three conditions for revitalization of IP finance. First, the steady supply of IPs with the independent value and trade potential must be ensured, and the IP system that provides the institutional support must be established. Second, investment funds and investment institutions that invest in IP should be expanded. Third, efficient markets for IP transaction and exit transaction must be established. In this study, we examine the cases of US and Israel for the changes in the governmental policy and institution, and in the firms' strategies relating to the three factors for the revitalization of IP finance and analyze the results. And then this study presents the high priority tasks to be undertaken for the revitalization of IP finance in terms of the change of direction in the means of IP protection and restoration, creation of bases for expanding the IP investment institutions.

Keywords

IP finance, IP protection, investment institution, exit market, alternative investment

